조합설립동의서 작성 시 신중하게 결정하세요!

가로주택정비사업 유의사항 알림

가로주택정비사업이란?

- 소규모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토지등소유자(조합)가 사업의 주체이며 사업계획수립 등 전반에 대해 스스로 결정하는 사업

가로주택정비사업 유의사항

※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 동의서 작성 전 다음 내용을 **꼭**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- ✓ 검인동의서 작성 단계부터 시공사가 확정된 것처럼 홍보하는 등 불확실한 사업계획으로 허위 과장광고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
- ✓ 사업시행계획서에 제시된 조합원 추정분담금은 확정 금액이 아니며 향후 추가 분담금 발생 가능
- ✓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이 등록된 자만 가로주택정비사업 업무의 대행 등이 가능하며 무자격 업체 등과의 계약으로 문제 발생 시 모든 피해는 주민(조합원)이 받음
- ✓ 조합설립에 대한 동의는 최초 동의 날로부터 30일까지만 철회 가능
  ※ 30일이 지나지 않아도 조합설립을 위한 *창립 총회 이후에는 철회 불가*
- ✓ 주민들의 합리적인 의사결정과 사업추진 여부를 판단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한국부동산원에서 상담, 사업성분석 등을 지원

가로주택정비사업 추진절차

조합 설립 인가 → 건축심의 (통합심의) → 분양 신청 → 사업 시행 인가 → 이주 및 착공 → 준공 및 청산

※ 시공사는 조합설립 인가 후 조합 총회 의결을 통해 선정